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집행부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11.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 제출일자: 2025. 11. 14.

○ 회부일자: 2025. 11. 14.

○ 검토기간: 2025. 11. 14. ~ 11. 21.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서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총괄)

(2025. 11. 30. 기준)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비고
	개 소	면 적 (천㎡)	개 소	면 적 (천㎡)	개 소	면 적 (천㎡)	
합 계	2,211	6,450	2,147	6,351	64	99	
교 통 시 설	1,801	3,263	1,756	3,224	45	39	
공 간 시 설	261	1,319	243	1,261	18	58	
유통 및 공급시설	22	161	22	161	–	–	
공공·문화체육시설	115	1,366	115	1,366	–	–	
방 재 시 설	5	286	5	286	–	–	
보건위생시설	2	49	2	49	–	–	
환경기초시설	5	6	4	4	1	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5. 11. 30. 기준)

구 분		미집행전체			10년 미만			10년 이상			비고
		개소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개소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개소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합 계		64	99	2,122	64	99	2,122	-	-	-	
교 통 시 설	소 계	45	39	1,273	45	39	1,273	-	-	-	
	도 로	42	36	1,182	42	36	1,182	-	-	-	
	주차장	3	3	91	3	3	91	-	-	-	
공 간 시 설	소 계	18	58	846	18	58	846	-	-	-	
	광 장	1	4	161	1	4	161	-	-	-	
	공 원	8	47	619	8	47	619	-	-	-	
	녹 지	6	6	47	6	6	47	-	-	-	
	공공공지	3	1	19	3	1	19	-	-	-	
기타 (수질오염방지시설)		1	2	3	1	2	3	-	-	-	

❍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 분		합 계			단계별 사업비						비 고
					1단계(2026~2028)			2단계(2029~)			
		개 소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개 소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개 소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합 계		64	99	2,122	22	52	966	42	47	1,156	
교통시설	소 계	45	39	1,273	21	23	836	24	16	437	
	도 로	42	36	1,182	20	22	813	22	14	369	
	주차장	3	3	91	1	1	23	2	2	68	
공간시설	소 계	18	58	846	1	29	130	17	29	716	
	광 장	1	4	161	-	-	-	1	4	161	
	공 원	8	47	619	1	29	130	7	18	489	
	녹 지	6	6	47	-	-	-	6	6	47	
	공공공지	3	1	19	-	-	-	3	1	19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	2	3	-	-	-	1	2	3	

※ 시설별 검토서 1부. (별첨)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2025. 11. 30. 기준 달서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7개 시설군에 시설결정 2,211개소, 집행 2,147개소, 미집행 64개소이고,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개소 중 교통시설은 45개소, 공간시설은 18개소,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1개소이며, 2026년 이후 단계별로 집행해야 하는 시설은 1단계(2026 ~ 2028) 22개소 966억원, 2단계(2029 ~) 42개소 1,056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2,122억원임.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개소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적 집행시설과 민간 자본 등이 투입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되며 특히, 재정적 집행시설 9개소의 경우에는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사료되나,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물이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별 조달 가능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25.7.10.>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현 행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다만, 시 계획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법 제85조